

- 간호나라2요양원 운영규정 - 입·퇴소규정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자의 자격과 입소절차를 마련하여 입소대상을 명확히 하고 입소조치 과정에서 제반 필요사항과 퇴소 및 장례에 따른 제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어르신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실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입소대상)

- ①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노인성 질환, 치매, 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 ②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자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 ③ 기타 시설장이 요양보호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로 노인장기요양등급이 없는자도 가능하며 이 경우 시설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시설등급을 신청하여 시설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3조(입소정원)

- ① 시설의 입소정원은 29명으로 한다.
- ② 수급자의 장기입원 등으로 외박 자가 발생한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의거 외박기간이 10일을 초과한 때부터 외박자를 대신하여 다른 수급자(이하 “특례수급자”라 한다)를 입소시킬 수 있다. 특례수급자는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정원의 5%인 1인으로 한다.

제2장 입·퇴소 절차

제4조(입소절차) 모든 입소자는 다음 절차에 따라 입소한다.

- ① 관할 시. 군. 구에서 입소의뢰 및 상담
- ② 관할 동사무소에 입소의뢰 및 상담
- ③ 보호자 입소상담 및 입소자 면담
- ④ 입소자 가정에 통보
- ⑤ 입소

제5조(입소계약)

- ① 계약목적
 1. 시설과 입소자 및 보호자(이하 “이용자”)가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입소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도록 하며, 입소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인지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3.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개시 전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시설과 이용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4. 계약체결 시 이용자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 및 비용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이용자 및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재계약 여부 확인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계약여부를 결정해 통지해야 한다.
 3. 이용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일까지 별도 통지가 없을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4. 제1호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인정등급 변경 또는 본인부담금 변경 시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5. 관계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변경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전자적 방법, 우편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6. 노인장기요양 비인정자의 경우(등급외자)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계약서에 따른다.
7. 기타 상세한 내용은 입소계약 약관에서 별도 정한다.

③ 계약의 해제

1. 이용자가 계약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가.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나.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다.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라.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 마.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다른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바.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 사.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④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1. 입소자가 부담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대표자가 정한다.
2.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3.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4.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5. 이용료 납부
 - 가. 입소자 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 기재된 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나.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 메신저, 스마트폰,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 다.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6. 입소보증금은 받지 아니한다. 시설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소계약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통보하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⑤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가.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나.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다.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라.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마.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바.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사.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 아.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자.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 차.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부·외출에 관한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가.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나.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납부에 관한 의무
- 다.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 마.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 사.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등의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제6조(입소구비서류) 입소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출서류—

- ① 장기요양인정서
- ②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 ③ 감염병 검사결과지(간염, 결핵, 매독 등 명기)
- ④ 주민등록등본
- ⑤ 신분증

—기초생활수급자 추가서류—

- ① 복지대상자 입소이용신청서
- ②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신청서
- ③ 전입신고 완료한 등본
- ④ 관할 행정관청 입소의뢰서(연수구청에서 배부하지 않고 입소 승인이 났을 경우 미제출 할 수 있다.)

—작성서류—

- ① 계약서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 ② 위임장
- ③ 처방전 및 약품수령 위탁서
- ④ 비상시 및 응급처치동의서
- ⑤ CCTV 설치 및 촬영 동의서 (별지 제 5호 서식 및 별지 제 14호 서식]
- ⑥ 계약의사 진료 동의서
- ⑦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⑧ 입소자 이용규칙 준수 서약서
- ⑨ 입소자의 권리
- ⑩ 신체안전에 관한 동의서

제7조(이용료 및 비용의 조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관계고시에 따른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본인부담요율이 변경되었을 경우
-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 비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 ⑤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8조(서비스 내용) 입소자를 장기간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한다.

- 가. 하루에 3회 이상 영양, 수급자의 기호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규칙적인 식사를 제공한다.
- 나. 주1회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 다. 수급자가 청결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일 배변관리 및 구강청결 등 위생관리를 제공한다.
- 라. 수급자의 신체적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이동지원 및 체위변경 등을 제공한다.
- 마. 기타 일상생활지원과 관련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한다.
- 바. 상시적으로 기능회복 훈련을 제공한다.
- 사.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심신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인지기능 프로그램 및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제9조(특별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입소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시설은 입소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신체를 제한하는 특별한 보호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소자와 다른 입소자의 보호를 위해 제한적으로 특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 제1호 단서에 따른 특별한 보호 제공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은 경우

나. 대체할만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3. 제1호 단서에 따라 신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용자의 심신상태,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등을 기록한다.

4. 입소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특별침실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종의료처치를 위하여 다른 공간이나 특별침실로 옮겨 전문 의료서비스(산소공급, 식선 등)를 제공할 수 있다.

2.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다른 공간 또는 특별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특별침실로 이동할 경우 미리 입소자 또는 가족에게 방을 옮기게 된 사유를 설명하고 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4. 그 밖에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 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입소자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제10조(의료서비스 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시설 내에서 제공하는 사항

1.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한다.

2. 간호(조무)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의사가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간호(조무)사는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4. 간호(조무)사는 입소자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② 협력 의료기관(계약의사) 및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1. 입소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보호자와 협의 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동의를 얻은 후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3. 입소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때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는 경우 직원을 의료기관까지 동행시킬 수 있으며, 보호자가 의료기관에 도착하면 입소자를 인계한다.

4. 시설의 책임자는 감염자나 감염 위험성이 있는 입소자를 즉시 격리하여 감염을 예방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간호(조무)사는 협력 의료기관의 의사나 지정된 계약의사가 월 2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자를 진료하고 건강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때 발생하는 계약의사 진료비, 약제비 등의 비용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11조(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① 시설은 입소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위험이나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소자는 시설 내에서 흥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할 수 없으며, 위험성이 높은 물건은 직원의 관리 하에 사용할 수 있다.

③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입소자의 안전 및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이용자 면회시간, 면회대상자 및 반입물품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비스제공자는 보호자 등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시설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입소자를 부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② 입소자나 보호자는 입소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입소자가 일상적인 생활 중 자연적으로 사망한 경우
 2.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3.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4.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제13조(외박, 외출)

- ① 입소자 또는 가족들이 외박이나 외출을 요청할 경우 시설장의 허락을 받아 외박, 외출을 할 수 있으며 외박시 외박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 ② 입소자의 외박이나 외출 시 입소자의 안전 및 사고예방을 위해 반드시 보호자의 동행을 확인한 후 허락한다.
- ③ 간호팀은 입소자의 외박이나 외출 시는 외출기록지에 기록한다.
- ③ 장기간 외박일 경우 간호팀은 가족들에게 투약관리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의사항을 가족들에게 알려준다.

제14조(보호자의 면회)

- ① 보호자의 면회 요청 시 요양원에서는 입소자와 보호자가 면회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 ② 보호자는 면회요청으로 원을 방문하였을 경우에는 담당직원을 통해 면회를 요청해야하며 면회기록지에 기록한다.

제15조(입소자 지참물) 입소자는 입소 시 개인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원과 상의하여 지참한다.

제16조(퇴소사유) 다음과 같은 퇴소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퇴소를 승인한다.

- ① 연고자 인도
- ② 입소생활의 부적응으로 본인이 퇴소를 요청했을 경우
- ③ 타 기관으로의 전원
- ④ 사망

제17조(퇴소처리)

- ① 타 기관으로의 전원이(퇴소) 결정되면 간호팀에서는 연계기록지를 작성하여 각1부씩 배부 및 보관한다.
- ② 보호자가 이용료를 전액 납부해야 최종퇴소처리가 완료된다.

제18조(임종과 장례절차)

- ① 입소자의 임종준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족이 있는 경우 연락을 통하여 임종을 어떻게 맞이할 건지 충분히 상의한다.
 2. 무연고자인 경우 시설 임·직원이 임종을 모시도록 한다.
 3. 임종 종교의식을 원할 경우 시설과 협의하여 평안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 ② 시설에서 사망했을 경우 가족에게 바로 인도한다.

제19조(어르신인 유류금품 처분)

- ① 유류금품은 주보호자에게 인계하며, 무연고자인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제 48조에 의하여 처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9일에 시행한다.

